

김해시립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인(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64명으로 한다.
- ②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관계기관 누리집, 시설 홈페이지, 직원 및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문자메세지를 첨부한다.

제4조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 다음달 1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이후 매월이용료는 매월 15일 전후에 납부하기로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가급적 계좌이체(경남은행:207-0139-5499-06 예금주:김해시립요양원)으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함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예:공연이나 영화관람 등)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세부내역(1일 기준) ※ 월 입소비 = 당월 이용한 일수 × 1일 비용

구분		비용(체크)	금액(원)	구분	비용(체크)	금액(원)	내역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부담비용	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92%)	2등급()	91,136	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88%)	2등급()	87,173	1일당	
		3등급()	84,042		3등급()	80,388		
		4등급()	84,042		4등급()	80,388		
		5등급()	84,042		5등급()	80,388		
	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90%)	2등급()	89,154	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80%)	2등급()	79,248		
		3등급()	82,215		3등급()	73,080		
		4등급()	82,215		4등급()	73,080		
		5등급()	82,215		5등급()	73,080		
입소자 개인부담 비용	요양급여 비용 - 경감(8%)	2등급()	7,924	요양급여 비용 - 경감(12%)	2등급()	11,887	1 일 당	
		3등급()	7,308		3등급()	10,962		
		4등급()	7,308		4등급()	10,962		
		5등급()	7,308		5등급()	10,962		
	요양급여 비용 - 경감(10%)	2등급()	9,906	요양급여 비용 - 경감(20%)	2등급()	19,812		
		3등급()	9,135		3등급()	18,270		
		4등급()	9,135		4등급()	18,270		
		5등급()	9,135		5등급()	18,270		
	식사재료비(1끼당) (○) 2,000			간식비(1일 2회 제공) (○) 1,000				
	상급병실로(1인실)			1층 생활실()		2층 생활실()		
80,000				150,000				

※ 정확한 금액은 매월 고지되는 장기요양급여이용명세서 참조

◇ 입소 시 비급여 항목 내역

항 목	내 역					비 용
식재료비 ※ 간식비는 식재료비의 20~30% 전후로 구입제공	-. 1식은 밥, 국 3찬 이상 매일 식단에 따라 면류나 탕 종류로 대체되거나 추가됨. -. 특히 조식과 중식, 중식과 석식 간의 간식 (과일, 빵, 떡, 찐 감자나 계란류 등) 포함.					-. 1식 당 2,000원 -. 하루 6,000원 -.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 간식비는 식재료비의 20~30%이내
	-. 비위관영양식으로 이엔솔브 등 경구유동식 지급. -. 조·중·석식에 경구식 1회 2팩 분량 정도 지급. -. 정규식사 외에도 조식과 중식, 중식과 석식 간에도 1팩 또는 두유, 특수경관식 지급. 이엔솔브 이외에 타 제품 지급 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경구유동식 지급 시 해당가격 적용
	-. 간식 및 특식: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치킨, 짜장면, 피자, 과일, 햄버거, 영양죽 등과 같은 음식류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구매.					-. 실비구매
	-. 시설 내 염색과 퍼머를 제외한 커트비는 무료 -. 시설외부 미용실 및 미장원에서 염색, 퍼머, 커트나 외부 미용사나 이용사의 초빙 비용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부담.					-. 시설 내 커트비용 무료 -. 시설 내 초빙된 이·미용사의 이·미용비나 시설외 이·미용실 사용은 실비
수액, 한약 및 기타 의약품	-.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급되는 약품을 입소자에게 지급. (비상 상비약은 제외) -. <u>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약품구입 후 원내 반입 절대금지</u>					-. 병원, 한의원 및 약국에서 고시하는 실비로 구매지급
촉탁의 회진비 (입소자부담금)	부담율	20%	12%	10%	8%	-. 촉탁의사 진료동의자는 비용별도 부담 (좌측참고)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
	초진	3,690원	2,210원	1,850원	1,480원	
	재진	2,640원	1,580원	1,320원	1,060원	
물티슈 및 화장지	-. 입소 중 기본적인 물티슈는 필요에 따라 지급 -. 3일마다 1봉(1롤)이상 대량으로 개인적으로 사용 할					-. 소량은 무상증정 -. 입소 중이라도 3일에 1봉이상

	때는 실비로 구매하여 지급. (입원 시 10일까지 물티슈 1봉, 화장지 2롤 시설에서 지급)	대량 사용 시 보호자 실비구매
기저귀 및 패드	- 기본적으로 제공되나 입원 시에는 시설에서 실비로 구매하여 제공하나 10일 초과 입원 시에는 보호자 부담	- 입원이나 외박 중 10일까지만 제공
보장구	- 대여를 원칙.(단 파손 시 전액 배상) - 입소노인이나 보호자의 요구로 구매를 원할 시에 실비로 구매하여 지급.	- 무료대여 및 실비구매 (단 파손 시 변상)
반입금지 품목	과도, 식칼, 가위, 면도칼, 술, 담배, 라이터, 처방 없는 약품, 과도하게 기름진 음식이나 젓갈 류, 반찬류 등의 상하기 쉬운 음식 (한 끼분만 반입가능)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여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에 관한 의무
3.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 요양비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요양비에 대한 비용 명세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나. 매월 요양비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병원이용 시 ‘을’에게 협조
2. ‘갑’의 월 이용료, 촉탁의 진료비, 병원진료 및 약값 등 비용을 연체 없이 성실히 부담
3. 인적 사항(주소지, 보호자 연락처, 입소자 개명사항 등)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불안정한 보행으로 낙상이나 부상위험이 클 경우, 억제대 사용이나 이동억제를 할 것인지 낙상위

험이나 부상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보행하거나 이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고지

5. '갑'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알려지나 부작용 식품 및 약물에 대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고지

6. '갑'이 시설 내에서 자연스럽게 사망하게 두도록 '을'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갑'의 DNR 거부 등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동의서 작성없이 '을'에게 연명치료 시행이나 병원 응급후송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 2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나 반드시 문자메세지를 첨부한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 차례 심한 배회와 난폭한 행동, 소란, 야수면방해 등으로 직원들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될때

3. '갑'의 이용료를 3회를 초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 (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9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반입 금지물품(처방없는 약품 등)을 제외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10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면회는 가급적 1층 면회실에서 실시하며, ‘갑’의 건강상태에 따라 생활실에서 면회할 수 있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 및 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서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급여제공】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요양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래진료 또는 입원시에만 이용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이용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신체 제재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제13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병’은 적극 협조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 ⑧ 시설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⑩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⑪ ‘갑’이 사망할 징조가 보이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선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 분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 임종 및 장례 】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갑’이 사망한 장소의 장이 사망신고를 한다.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 상기 ①과 ②와 관련하여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신청하고 나머지 비용은 ‘갑’의 유류금품으로 처리하며 부족 시에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하거나 무연고자는 실비로 ‘을’이 부담한다.
 - 2. 단 ‘병’ 또는 신원인수인이 장례를 위임할 경우에는 ‘갑’의 유류금품을 지급하여 장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무연고자나 ‘병’ 또는 신원인수인이 ‘갑’의 호적 등 행정절차에 관한 문서에 기재된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거친 후 ‘갑’의 유류금품을 시설 운영금 등으로 편입하여 처리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자연 발치, 육안관찰 상이나 출혈 등 특별한 사전징조가 없는 신체 내의 출혈, 뇌출혈, 정·동맥류, 심장마비로 인한 부상발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 이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여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 부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병'이 '갑'을 면회나 외출, 외박 등으로 시설 밖으로 인도하여 나간 동안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병'이 '갑'이 금기해야 할 알려지나 부작용 약품이나 식품을 고지하지 않거나 단순 구두로 고지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7. '을'이 '병'에게 '갑'의 보행 불안정이나 낙상 위험도가 높아 억제대 착용이나 이동억제에 대해 3회 이상 '병'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억제대 사용 및 이동억제를 '병'이 용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해나 사망사고 때

8. '을'이 '병'에게 '갑'의 연장장애로 L-Tube 사용을 문자메세지 등 2회 이상 강력히 촉구함에도 거부하거나 사용 동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나 사망사고 때

제19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보호자 권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갑'의 본 요양이용계약 및 '갑'의 신변과 금전출납, 신분증 반입·출 등과 관련하여 호적과 같은 행정문서상에 가족이나 친·인척의 관계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보호자나 대리인이라고 본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보호자나 대리인이라고 사칭할 경우는 관련법규나 행정예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